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19 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고동진・박덕흠・박충권

서일준 · 김성원 · 김상훈

백종헌 • 나경원 • 박준태

강승규 · 이달희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(PTSD)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국가보훈부로부터 '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'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'비해당' 판정을 받아, 국가가 제1연평해전의 영웅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공로를 잊었다는 질책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음.

살펴보면, 1999년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(PTSD)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음(국내의 경우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PTSD를 주목)과 동시에,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어려웠던 현실,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이 PTSD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,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금까지 '입법

및 사회적인 사각지대'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.

이에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'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'에도 불구하고,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,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대통령령에 따라 '별도의 상이등급'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6조의6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 의4에도 불구하고,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, 현재 시점의 사회활 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이등급 판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

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참여한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6(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	제6조의6(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
한 특례)	한 특례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군인이나 경찰・소방 공무
	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
	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
	<u>수행과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</u>
	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
	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
	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
	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
	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의
	4에도 불구하고, 당시 직무의
	성질 및 상황, 현재 시점의 사
	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
	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
	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상이등
	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.